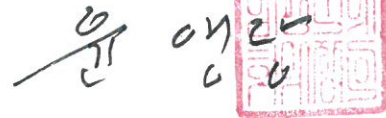


규 칙 공 포 문

제28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
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1월 13일

함 평 군 의 회 의 장



함평군의회 규칙 제37호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7
조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함평군의회회의규칙」”을 “「함평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함평군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)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”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”을 “법
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단서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61조의1을 제61조의2로 한다.

제96조제1항 중 “있으면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”를 “있으면”으로 한다.

제96조의1 및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으로 한다.

제96조의3(중전의 제96조의2)제3항 중 “제96조의1제2항”을 “제96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1조에 따라 함평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함평군의회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제16조(징계) ----- ----- ----- ----- 「함평군의회 회의 규칙」----- -----.

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 등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법 제72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7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(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)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	<p>제47조(표결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 <u>법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(생략)

제61조의1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96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군수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96조의1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) ① ~ ③ (생략)

제96조의2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·② (생략)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96조의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1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-----

제96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-----

있으면 -----

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6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96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96조의2 제2항 -----

-----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3. 7. 10.] [대통령령 제33621호, 2023. 7. 7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 044-205-3307

행정안전부(선거의회자치법규-지방의회, 제33~61조) 044-205-3373

제57조(소개의견서의 첨부)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(紹介)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.